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192
- 발의자 : 장태용 의원(찬성자 31명)
- 발의일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층 및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재단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 지원 외에도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목적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성장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함(안 제명, 안 제1조).
- 나. 지원대상을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미래인재를 새롭게 정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조, 안 제6조).
- 다. 사업의 주된 범위를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청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5조).
- 라. 재단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자구 일부 정비함(안 제6조).
- 마. 재단 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2025.10.28 ~ 11.1.)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원 외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장학재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조례개정의 목적, 정의, 사업, 지원대상, 임원 자격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 조 문 체 계     | 주 요 내 용                            |
|-------------|------------------------------------|
| 조례명         | – 제명 변경 : 서울장학재단 → 서울미래인재재단        |
| 제1조(목적)     | –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  |
| 제2조(정의)     | – ‘학생’, ‘청소년’, ‘청년’, ‘미래인재’를 정의    |
| 제5조(재단의 사업) | – 미래인재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 |
| 제6조(지원대상)   | – 저소득 가정의 학생, 청소년과 청년 등            |
| 제7조(재산의 조성) | – 재단의 운영재원 중 기금 삭제                 |
| 제8조(정관)     | –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
| 제9조(임원)     | – 이사장과 이사 자격 요건 규정                 |
| 부 칙         | – 경과조치                             |

- 장학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민간장학재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통적 장학방식(등록금·수업료 지원 중심)의 효과성이 약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의 재구조화·재설계 등이 요구되는 전환기로 보여짐.
- ‘서울장학재단’(이하 ‘본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서울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표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도 AI·이공계, 글로벌인재, 진로개발 등 서울 미래산업과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신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본 개정안은 단순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학업 중 또는 졸업 후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능동적, 체계적 인재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장학 관련 수요의 형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방식 변화를 추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본 재단의 정체성 및 지원 배분 불균형, 재정 효율성 및 기능 중복 문제, 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조례의 명칭 및 목적(안 제1조)

- 본 재단의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확장한 것은 재단의 역할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재단은 ‘교육복지 기관(전통적인 장학기관의 기능, 경제적 지원)’에서 ‘성장지원 플랫폼(청소년·청년의 성장경로 설계 및 미래 역량 지원 등)’으로의 정체성을 전환하려는 것이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교육 격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 본 재단의 기존 역할(학비 지원)은 축소하고, 생활·경험·역량·경로 지원은 확대하며,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이 ‘교육 접근권 보장’ 또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여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정의(안 제2조) 및 지원대상(안 제6조)

- 안 제2조는 ‘청년’과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미래인재’는 학생, 청소년, 청년으로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진로 탐색 및 경력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미래인재’의 정의는 범위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능동적 참여’ 등은 객관적 계량이 어려워, 심사 과정에서 특정 분야(예: IT, 창업)에 편중되거나,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br>가.~라. (생략) | 1.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br>가.~라. (현행과 동일)  |
|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신설>  | 3.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 <신설>  | 4. “미래인재”란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람으로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과 청소년에서 청년과 미래인재까지 포괄· 확대하여 고등 교육 이후 취업 준비 및 경력 전환 시기에 있는 청년층에게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미래인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 교육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거나, 각광받지 못했던 활동(연구·사회공헌·산업연계, 역량 등) 등에 참여하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방대한 인구 집단으로, 이들이 재단의 지원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재단이 지원해야 할 잠재적 수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인바,
  -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학생 중심의 장학사업과 수많은 청년층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단위당 장학금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사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명확한 재원 기준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 제6조(지원대상) ① 재단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p>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p>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li> <li>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li> <li>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li> <li>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원한 학교의 학생</li> <li>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li> <li>2.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년</li> <li>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
| <p>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p>  | <p>②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p>&lt;신설&gt;</p>   | <p>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특정 분야나 계</p>   |

| 현 행      | 개 정 안  |
|----------|--|
|          | 총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항 단서조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또한, 본 재단이 주력하려는 진로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은 이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라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청년의 고용확대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정체성의 희석(Dilution of Identity), 정책 효과 분산, 책임소재 모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자의 혼란(장학금인지, 청년지원금인지) 방지 및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분장·지원대상 조정·정책 통합 또는 단일 창구 운영 등의 사전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장학금 지급은 주로 서류 심사와 자금 집행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업무지만, 진로 개발, 취업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영역인바, 현재 재단의 인력 구조와 조직 역량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경을 원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력 담보가 서울시 장학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3.>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임원 자격요건 개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재단의 사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임원 자격에 '교육·산업·과학기술' 등 미래인재 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이사회와의 전문성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원 구성 시 특정 분야 전문가(예: 산업계나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편중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재단의 또 다른 축인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관점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임원)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과 시 교육청 관련 실·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br/>&lt;개정 2012. 5. 22.&gt;</p> | <p>제9조(임원) ② 이사장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 또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li> <li>2. 교육·산업·과학기술·문화·복지 등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

#### 4) 부칙(제3조)

- 안 부칙 제3조는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됨.

| 현 행   | 개 정 안   |
|---|---|
| <p><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br/>부터 시행한다.</p> | <p><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br/>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br/>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br/>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2호타목 중 “서울<br/>장학재단”을 “서울미래인재재단”<br/>으로 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br/>종전의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br/>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br/>른다.</p> |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체성 혼란, 전문성 부족, 기능 중복 등의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어, 성공적인 본 재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면적인 사업 전환과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며 단계적 사업 확대 및 전환 방안
  - 기존 서울시 행정기관과 역할 분담 및 재단 고유의 기능 설정 여부
  - 현실적 재원 규모 추계 및 기부금 유치 전략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

|      |     |       |     |
|------|-----|-------|-----|
| 전문위원 | 정찬일 | 입법조사관 | 채태준 |
|------|-----|-------|-----|